

의안번호	2216168
의 퇴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6. 3. 11.
추계번호	26B029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안 제17조의2제3항)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¹⁾의 활용을 지원하기

1) 시행령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퇴직 과학기술인 등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신규 채용 및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관련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2024	2025	2026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	퇴직한 과학기술자,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이 지방 대학(원)이나 지자체 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강의 및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13,752	13,752	13,490
인재활용확산지원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	중소기업과 퇴직 고경력 과기인을 매칭하여 취업 전 단기 연구원으로 해당 기업 기술개발 수행 지원	—	900	3,300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 등 지원	636	509	509
나노·소재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 고경력 전문인력 활용)	민간 고경력 퇴직인력을 한국나노기술원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장비 활용지원, 기업 애로기술 지원 등 수행	900	1,450	1,450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 (반도체 고경력·신중년 전문가 활용지원)	민간 고경력 퇴직인력을 나노종합기술원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장비 활용지원, 기업 애로기술 지원 등 수행	1,000	1,000	1,000
합 계		16,288	17,611	19,74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향후 실시될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규모, 전문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